##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53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6.

발 의 자:고민정·장철민·김한규

백승아 · 김준혁 · 박정현

임호선 · 김동아 · 진선미

이병진 · 오세희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논술고사, 구술·면접고사 등 대학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학별고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그런데 대학별고사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최근 일부 대학의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발생하는 등 대학별고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·감독이미흡한 측면이 있음.

이에 교육부장관은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대학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9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4조의9(대학별고사의 실시)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대학별고사(논술 등 필답고사, 면접·구술고사, 신체검사, 실기·실험고사 및 교직적성·인성검사를 말한다)의 성적 등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  -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대학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  -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제2 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4조의9(대학별고사의 실시) ①
	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
	은 대학별고사(논술 등 필답고
	사, 면접・구술고사, 신체검사,
	<u>실기·실험고사 및 교직적성·</u>
	인성검사를 말한다)의 성적 등
	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
	<u>있다.</u>
	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
	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
	위하여 대학의 장이 준수하여
	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
	<u>여야 한다.</u>
	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
	제2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는
	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.